

2017-06 책임연구보고서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

정웅



목 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8
제2장 마약류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22
제1절 직무분석을 통한 조사 설계 및 설문	22
1. 조사 설계	22
2. 설문 진행 및 데이터	27
제2절 업무량 분석 결과	30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30
2.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35
제4장 마약수사팀의 적정 업무량 및 인력 산출	43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43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43
2. 마약수사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45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46
제2절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47
1.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47
2.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48
제3절 마약수사팀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50
1. 기본 모형	50
2. 표준 모형 : 업무 손실의 고려	51
제5장 결 론	53
참 고 문 헌	60
부 록	6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3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96



표 목 차

<표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9
<표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8)	12
<표 3> 경찰의 2017년도 마약류사범 대응활동 추진계획	15
<표 4>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분석)	18
<표 5>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및 착안점)	19
<표 6>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23
<표 7>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9월 현재)	31
<표 8> 마약류 사건의 기초통계	34
<표 9>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	37
<표 10>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41
<표 11>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t-검정	42
<표 12> 마약류 사건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42
<표 13>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日)	49



그림 목 차

<그림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10
<그림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6)	13
<그림 3> 경찰의 인터넷·SNS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14
<그림 4>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4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개방화의 진전 속에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 들어 11,916명 검거됨으로써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4,214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¹⁾ 아울러 그 유통구조 면에서 단순한 오프라인 거래 외에 인터넷·SNS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변화·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범죄의 대응에 필요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이하 마약수사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사범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 외에도 마약류범죄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 마약수사팀은 적절한 수사인력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즉 마약류범죄는 비교적 일정 지역 내에 국한되는 폭행사범 등과 달리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투약까지 유통과 소비 구조가 매우 넓은 광역성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그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 추적수사와 깊이 있는 첩보활동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사인력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1) 국내 마약류사범 총 검거 인원(그중 경찰 검거 인원)은 2012년 9,255명(5,105명) ⇒ 2013년 9,764명(5,459명) ⇒ 2014년 9,984명(5,699명) ⇒ 2015년 11,916명(7,302명) ⇒ 2016년 14,214명(8,853명)으로 매년 늘어나, 2016년 총 검거 인원(경찰 검거 인원) 규모는 2012년 대비 약 1.5배(1.7배) 증가하였다.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적정 수사인력 확보를 통한 마약류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부터 밀반입·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마약수사팀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사범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마약수사팀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경찰의 마약류범죄 관련 수사업무 중에서도, 현재 경찰관서의 마약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경찰관서의 마약수사팀은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 및 지방청 마약수사대의 마약수사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서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팀”에서 처리하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한정되며, 그밖에 타 수사기능에서 다루어진 마약류범죄 사건 또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는 제외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마약류범죄 발생 추세 및 업무량 분석과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제3장에서 조사 설계, 수사관 면담과 설문을 통한 마약류범죄 수사직무 및 세부 업무량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4장에는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및 마약수사팀 적정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마약류범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마약류사범의 총 검거 인원(경찰 및 타 기관 검거 인원 포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에 9,984명으로 점증하여 오다가, 2015년 들어 11,916명으로 급증하고(전년 대비 19.4% 증가), 지난 2016년에도 다시 14,214명으로 늘어나(전년 대비 19.3% 증가), 그 규모가 최근 들어 연평균 약 2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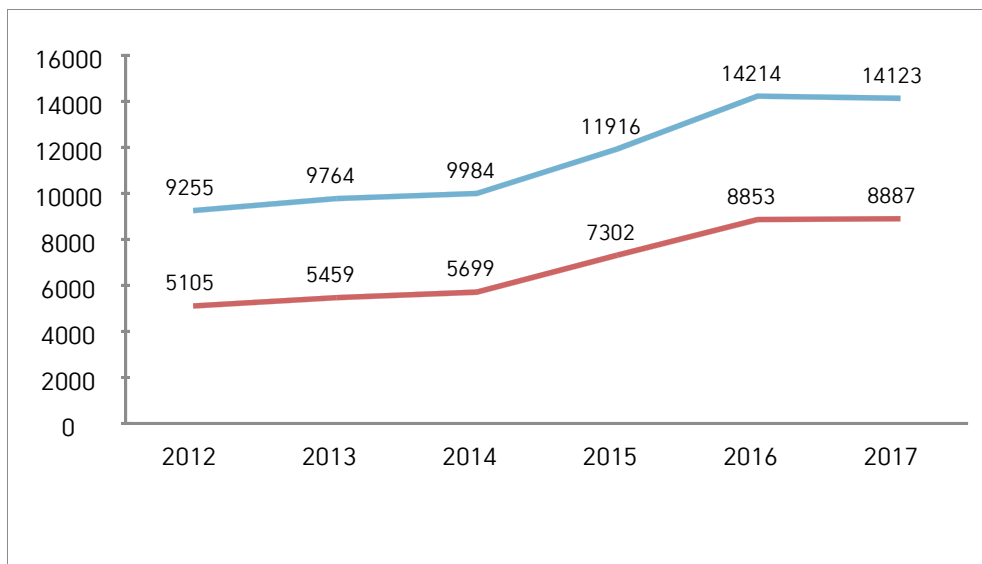
	총 검거(명)	경찰 검거(명)	경찰의 검거 비율(%)
2012년	9,255	5,105	55.2
2013년	9,764	5,459	55.9
2014년	9,984	5,699	57.1
2015년	11,916	7,302	61.3
2016년	14,214	8,853	62.3
2017년	14,123	8,887	62.9

주: 총 검거 인원은 경찰 외, 검찰, 해경, 관세청 등의 검거 인원을 포함.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한편 마약류사범의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그림 1>에서 보듯이 2012년도의 경우 총 9,255명 가운데 5,105명을 검거함으로써 전체 마약류사범의 절반 이상인 55.0%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이후 2013년에도 5,459명을 검거하여 경찰 검거 비율이 56.2%로 증가하고, 계속해서 2014년 5,699명(경찰 검거 비율 56.0%), 2015년 7,302명(61.5%), 2016년 8,853명(62.3%), 2017년 8,887명(65.4%)을 검거하는 등 검거인원과 동시에 그 검거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특히 경찰은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에 이미 1만 명을 초과하는 등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6년에 연말연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3개

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4개월),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집중단속(6개월) 등을 통해 마약류사범 8,349명을 검거함으로써, 전년 7,302명 대비 20.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

지난 2016년 마약류범죄에서 마약류별 검거유형을 보면 검거 인원 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74.6%(6,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약사범 15.0%(1,332명), 대마사범이 10.3%(913명)로 나타났다.³⁾ 세부적으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 중에서는 필로폰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 경우는 대부분이 양귀비 밀경작사범이었다. 이는 지난 2016. 5월~10월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 등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향정사범 2,962명 중 필로폰사범이 80%(2,370명), 마약사범 1,064명 중 양귀비사범이 96.9%(1,031명)를 차지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2016년 마약류범죄에서 국적별 검거유형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을 711명 검거하여 전년 408명 대비 74.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2년 235명, 2013년 224명,

2) 2016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 연말연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 2015. 11. 6 ~ 2016. 2. 15. (3개월)
→ 1,512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1,049명 대비 44.1% 검거 인원 증가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6. 4~6월 (3개월)
→ 114명 자수하여 전년 동기 77명 대비 48.1% 자수자 증가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2016. 4~7월 (4개월)
→ 1,385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1,154명 대비 20.2% 검거 인원 증가
-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등 집중단속 : 2016. 5~10월 (6개월)
→ 4,480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3,851명 대비 16.3% 검거 인원 증가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경우, 마약류의 종류는 크게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 등 세 범주로 분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분류범주 내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포함된다(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 이해, 2015. 11, 69쪽).

- ① 마약 :
 - 양귀비(아편), 모르핀, 헤로인, 테바인,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천연마약**.
 - 페치딘, 메사돈 등 **합성마약**.
- ② 향정신성의약품 :
 - LSD, JW-018 등 **환각제**.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야바(YABA),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엑스터시) 등 **각성제**.
 - 졸피뎴·프로포폴 등 **신경안정제**.
- ③ 대마 :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hashish), 해쉬쉬 오일(hashish oil).

2014년 349명, 2015년 408명, 2016년 711명이 검거되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사범 중에는 특히 중국인이 50.9%(36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인 30.7%(218명), 그 외 미국인 4.6%(33명) 순이었다(2016년 기준). 중국 및 태국인 마약류사범들은 중국동포 근로자와 태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한 가운데 이들 중국인·태국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가장 비중이 높았던 미국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과 관련된 마약류를 보면 중국인의 경우 필로폰, 태국인은 야바(YABA)⁴)가 주종을 이루고, 미국인 관련 사건에서는 대마가 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8)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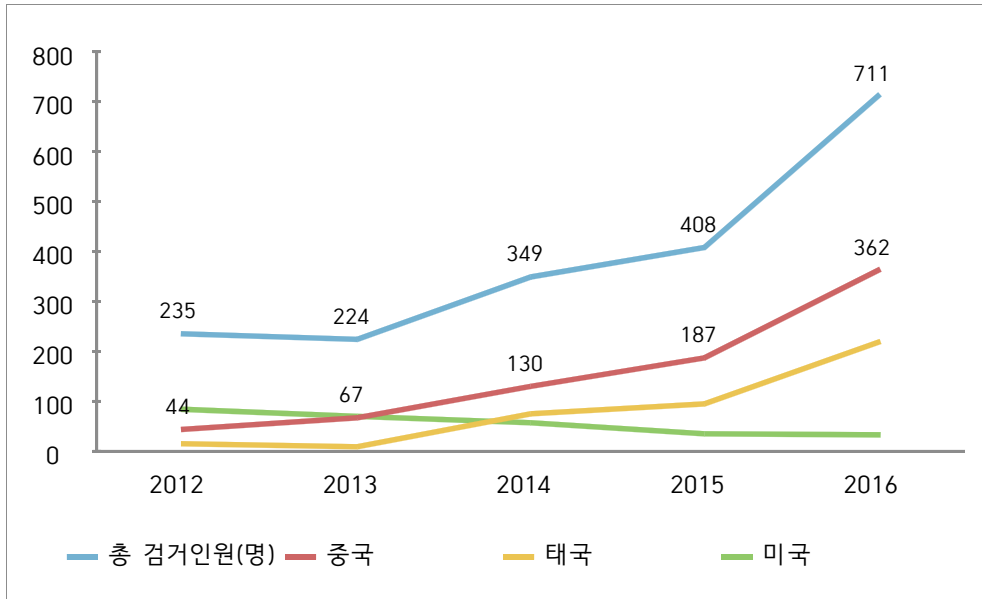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8월
총 인원	235	224	349	408	711(100)	425(100)
중 국	44	67	130	187	362(50.9)	198(46.6)
태 국	15	9	75	95	218(30.7)	147(34.6)
미 국	84	70	57	35	33(4.6)	19(4.5)
기 타	92	78	87	91	98(13.8)	61(14.4)

주: ()는 전체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4) 야바는 미얀마의 세계적 헤로인밀매업자였던 ‘쿤사(Khun Sa)’의 마약조직이 개발한 것으로,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과 기타 성분(코데인 등)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분말이 아닌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었으며, 복용 시 최대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각성 및 환각효과가 강하다.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 이해, 2015. 11, 120쪽.

<그림 2>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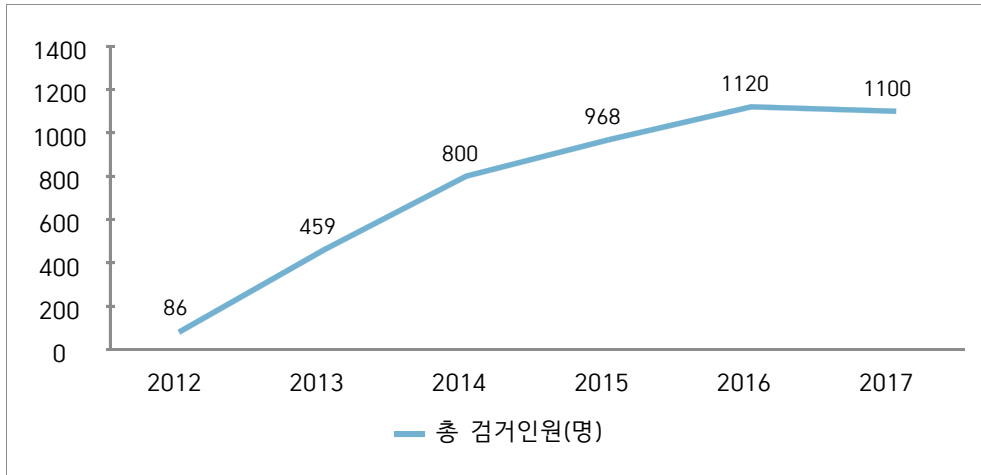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마약류범죄 유형 가운데서,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사범(인터넷 마약류사범)은 <그림 3>에서 보듯이 2012년 86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으로 급증하고 2016년에는 천명 단위를 넘어선 1,120명이 검거되어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경우와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전년 수준인 1,100명이 검거됨으로써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향후에도 그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래 인터넷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수면제·다이어트제·GHB 등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필로폰·대마 등 주요 마약류까지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마약류사범의 확산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경찰의 인터넷·SNS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최근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증가 추세 속에, 향후에도 국제적 교류의 증가 및 인터넷·SNS 등 통신망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이 기존 중독자에게서 일반인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7년 들어서도 증가 추세에 있는 인터넷·SNS 이용 유통사범 및 외국인사범 단속 강화⁵⁾,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및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병의원 단속⁶⁾, 관세청·해외단속기관과 마약류 국제유통 차단을 위한 공조강화⁷⁾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판매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과 대응활동을 계획한바 있다 (<표 3>).

- 5) 인터넷·SNS 이용 사범 집중단속으로 일반계층으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유통사범 집중단속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통 차단을 도모.
- 6)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아편 등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의심 병의원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상·하반기 각 1회)을 실시.
- 7) 관세청과 공동으로 유관기관 초청 공조회의 개최, 수사국장 주재 해외 마약류단속기관 초청 국제공조회의 개최.

〈표 3〉 경찰의 2017년도 마약류사범 대응활동 추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사범 집중단속(2~4월)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4~7월) ◆ 경찰청·관세청 마약수사 공조회의 개최(5월) ◆ 의료용 마약류 관리위반 사범 등 합동점검(6월)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 등 특별단속(6~10월) ◆ 필로폰 공급사범 등 특별단속(7~10월) ◆ 의료용 마약류 관리위반 사범 등 합동점검(11월)

자료: 경찰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 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경찰 내 수사기능의 업무량 추정, 더 나아가 수사조직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등 수사조직의 직무 및 업무량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연구대상(여러 범주에서 규정될 수 있는 수사기능·조직)과 접근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찰서 형사과 및 조사계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992)가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경찰조직의 형사과 형사 및 조사계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내·외근 수사기능의 업무량과 소요인력 등을 폭넓게 분석한 데에 큰 의의가 있었지만, 접근방법에서 극히 소수 인원에 국한된 수사관 면담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아쉬움이 남고 있다.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2010년대에 들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2011)과 변화된 수사조직 등 수사 환경을 반영하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과거 조사계 조직에서 발전한 일선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수사 업무량 분석과 적정인력 산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팀 적정 업무량 연구(2012)를 진행하였다. 경제팀 연구에서는 수사관 면담 외에도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에 기초한 연구접근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이후 연구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연구방법 기조가 유지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3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의 정식 출범을 준비하면서 신설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업무모형(인력표준안) 연구(2013)도 진행하였다,

그밖에 성폭력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윈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구(2014)가 이루어졌고, 일선 경찰서와 지방청 수사대를 포괄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 보이스피싱 연구(2015) 등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경찰서 경제팀 연구는 KDI의 연구(1992)와 비교할 때, 분석범위가 수사기능 중 경제팀(과거 경찰서 조사계) 업무에만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연구방법에서 KDI의 소수 수사 실무자 면담 조사 방식과는 달리 전국 경찰서 경제팀의 접수 사건 전체(정식접수 사건 외에, 임시접수 후 상담 반려된 사건까지 포함)를 기초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업무량 추정결과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사건 유형별 사건 비율 및 전체 11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추정하고(정식접수사건 10개 유형 및 상담반려사건 1개 유형)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제팀 적정 필요인원을 산출하였다.

2013년에는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전담팀 설치 및 전국적인 확대를 준비하면서 서울 관악경찰서의 시범 전담팀과 동 경찰서 내 기존 형사과를 대상으로 수사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시범관서 연구라는 특성 때문에 조사 대상이 1개 표본 경찰서에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시범관서라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형사팀)와 신설 부서(시범 전담팀)의 성폭력사건 수사업무를 비교하여 그 업무량을 추정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 전담팀이 피해자 보호 및 증거분석에서 형사팀에 비해 우수한 조직 모형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표 4〉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분석)

구분	KDI, 용역연구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 연구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팀 연구 (2013)
조사대상	형사과 형사, 조사계 조사요원	전국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서울 관악서 시범전담팀 및 형사팀
연구방법	수사관 면담	수사관 면담 설문조사 · 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 통계분석
사건유형	형사 및 조사 2가지만 구분	경제범죄 11개 유형 (사기, 횡령 등)	성폭범죄 12개 유형 (강제추행, 강간 등)
건당평균 처리시간	외근형사: 40시간 조사요원: 25시간	정식접수사건: 21.8시간 상담반려사건: 47 분	강력팀: 28.8시간 전담팀: 17.4시간

자료: 주학중 편(1992);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2, 2013).

<표 5>에서 보듯이 2014년에 전국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여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앞선 경제팀 및 성폭력 전담팀 연구와 같이 사건 유형을 구분하되 피해자 조사라는 원스톱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반인, 아동, 장애인, 장애아동, 비(非) 녹화 조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조사 대상 유형별로 조사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2014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대상의 연구에서도 사건 유형을 구분하여 관서별(지방청, 경찰서), 보험종목별(상해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세분하여 각 유형별 조사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표 5> 선행연구의 비교(수사기능 업무량 및 착안점)

구분	치안정책연구소, 원스톱 연구 (2014a)	치안정책연구소, 보험사기 연구 (2014b)	치안정책연구소, 보이스피싱 연구 (2015)
조사대상	전국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여경 100명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495명	지방청 지수대 및 전국 경찰서 지능팀 361명
연구방법	수사관면담, 설문조사 · 통계분석	수사관면담, 설문조사 · 통계분석	수사관면담, 설문조사 · 통계분석
사건유형	피해자조사 5개 유형 (아동, 비녹화 등)	수사관서별(지수대, 지능팀), 보험종류별, 보험종목별	단일 최종 사건으로 세부 유형 없음
건당평균 처리시간	-일반인: 670분 -아동: 716분 -장애자: 733분 -장애아동: 734분 -비녹화조사: 679분	- 경찰서 지능팀 393시간 지방청 지수대 1,383시간 - 생명보험 528시간 손해보험 314시간 사회보험 391시간 다중보험 744시간	170.58시간
수사 착안점	업무환경과 착안점: -피해자 조사 인프라 -근무 형태 -원스톱 내 지원기능 -원스톱 외부 경찰기능 -업무 손실	분석 요소와 착안점: -정보협력 -유관기관 수사지원 -유형별 수사기법개발 -증거분석 전문성 확보 -조사시설 개선 -법규 정비	분석 요소와 착안점: -전담수사 인력 증원 -외근 전담팀 확충 -국제공조의 강화 -수사 인프라의 개선

자료: 정웅 각년도 연구보고서(2014a, 2014b, 2015).

한편 <표 5>에서 보듯이 2014년 이후 진행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 보이스피싱 연구 등에서는 기존의 수사 업무량 분석 외에,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착안점 도출을 위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즉 원스톱 연구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업무환경)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 인프라, 근무 형태, 원스톱센터 내부 타 지원부서 및 원스톱센터 외부 경찰기능과의 관계, 업무수행 중 정상적 업무손실을 분석하였다.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경우에는 개선점 도출을 위한 분석요소로서 기관협력, 수사기법, 분석역량, 조사인프라, 법제도 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사 착안점으로서 범죄첩보 filtering(정보협력), 유관기관 수사지원, 유형별 대응(수사기법개발), 증거분석에서의 역량 제고(전문성 확보), 사건조사에서의 물적 인프라 확충(시설개선), 적용법조에 대한 명확성(법규정비) 등 법제 개선을 다루었다. 보이스포싱 연구 등에서도 추적수사 역량제고를 위한 외근 전담팀 확충, 국제공조의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수사관 개인 또는 경찰청 단위(전체 경찰관서)의 연구 및 그 업무량 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팀 단위” 연구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각 선행연구의 理論的 모형에서는 수사관 개인 외에도, 팀 단위 차원에서의 업무량 및 소요인력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實證的 분석 내용은 오로지 개인 업무량 및 그에 기초한 경찰청 차원에서의 소요정원을 산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요정원이 확보·배치된 후 현장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팀원 개개인의 업무량보다도, 팀장을 포함한 각 팀 전체의 적정 업무량 및 팀 인력규모일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팀 단위” 연구의 필요성에서 진행된 것이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2016)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팀 규모가 소팀제를 지향하되, 구체적으로는 팀장 포함 5명(팀장 1명+팀원 4명)인 팀 편제를 기본 체제로 운영하면서, 팀장의 수사지휘 업무량(=팀 전체 사건처리 건수)은 연간 441.3건(정식 344.8건+반려 96.5건)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여타 수사 기능에서도 경제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팀 단위” 연구가 추가로 진행

되는 것이 실무적인 팀 운영 설계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최근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2017) 등 각 수사기능별 연구가 계속 진행됨으로서, 단순히 소요정원의 산출뿐만 아니라 경제팀을 비롯한 각 수사기능 간 기본적인 수사 업무량(정식 및 임시 사건) 및 업무손실률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범주)와 분석 수준(단위)에서 진행되는 수사기능 직무 분석 및 업무량 연구들은 향후 경찰 각 기능별 필요 수사인력 산출과 적정 배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

제1절 직무분석을 통한 조사 설계 및 설문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설계는 앞선 경제팀 연구(2013),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2014a)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b), 사이버팀 연구(2017) 등에서의와 같이 사건의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의 현장 업무 흐름 즉 수사 프로세스 시각에 기초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서 마약수사팀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수사 프로세스 상에서 세부업무 범주는 지방청 및 경찰서 마약수사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담당 직무 면담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크게 ① 초기 수사 업무, ② 본 수사 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① 초기 수사 업무는 첩보의 수집, 그리고 수집된 첩보에 대한 분석 및 내사 업무를 포괄한다.

초기 수사 중에서 우선 첩보수집 단계의 업무 내용에서는 정보원의 선정 및 관리, 마약류전과자에 대한 동향관찰, 운송·숙박·여행 등 마약류 유관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첩보활동, 인터넷을 이용한 첩보 모니터링,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등이 포함된다.

〈표 6〉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내용	조사목적	
초기 수사	첩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원 선정·관리, 전과자 동향관찰, 유관 업종 종사자 첩보, 인터넷 모니터링 -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업무량 (시간) 추정	
	첩보 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첩보 검증: 정보원 진술 범죄전력 확인, 통신·계좌인터넷 분석 탐문, 위장거래(샘플구매), 감시 - 첩보검증 관련 서류작업: 정보원 진술조서 영장 신청 내사보고서 작성 	"	
본 수사	수사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금융거래정보용 영장 신청 등 서류작업 	"	
	인터넷 통신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추적수사 - SNS통화 등 추적수사 	"	
	외근 추적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소재지 탐문 - 감시(잠복, 미행, 촬영, 감청, 위치추적) 	"	
	위장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 수집을 위한 위장거래(샘플구매) 	"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된 통신, 계좌, 인터넷 수사자료 분석 - 수사보고 등 서류작업 	"	
	공조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조(외교경로, 인터폴) -국내공조(유관기관 간 공조) 	"	
	현장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거 및 압수·수색: 출동 준비(장비 등) 현장 이동, 피의자 검거, 증거물 압수·수색 현장 채증(소변·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 현장 압수·수색채증 관련 서류업무 	"	
	관계자조사	피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혐의자 조사 - 공범수사, 상·하선 추적수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신문조서 작성정리 등) 	"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참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증거물 보안을 위한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증거물 처리	- 증거물 감정요리 - 압수물 보관처리 - 증거물감정압수물처리 관련 서류업무	"
	피의자 신병처리	- 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의 집행(또는 미집행에 따른 조치)	"
	수사 지휘	-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 외근 시 동행	"
수사 마무리	서류 정리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작성 - 송치 전 수사서류 최종 검토·정리	"
	검찰송치	- 피의자 신병호송	
업무 손실	교육 연가	- 수사 중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실시 - 정상적 업무손실 규모의 추정	적정 업무량 재산정
계			총 (시간)

첩보내사는 기 수집된 첩보에 관련된 내사활동 업무이다. 여기에는 첩보 검증 작업으로서 대상자 범죄전력 확인, 통신자료에 대한 분석, 인터넷상의 내사, 내사 착수 및 결과에 대한 서류작업이 포함된다. 첩보내사에는 더 나아가 샘플구매(위장거래) 또는 감시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본 수사 업무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 수사자료 요청
- 인터넷·통신수사
- 외근추적수사
- 위장거래
- 자료분석
- 공조수사
- 현장출동
- 관계자조사
- 압수증거물 처리

- 피의자 신병처리
- 수사지휘 등의 내·외근 업무가 포함된다.

위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자료 요청업무는 통신자료 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압수수색영장(금융거래정보용 포함) 신청 등 수사자료 수집 前 각종 요청서 및 영장 서류업무가 포함된다.

인터넷·통신수사는 인터넷 IP·사이트 추적, 통신(SNS·전화) 수사 등 인터넷·통신 상의 추적수사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외근추적수사는 대상자의 소재지 탐문, 감시(잠복, 미행, 사진촬영, 감청·위치추적) 등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고 위장거래는 증거 수집을 위한 위장거래로서 샘플구매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료분석은 앞선 통신 및 금융거래자료 요청, 인터넷·통신 및 외근 추적수사 등으로부터 확보된 수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사보고 업무를 포함한다.

공조수사는 외교경로 및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그리고 유관기관 간 수사협력과 같은 국내공조 업무가 포함된다. 마약수사는 생산과 소비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제성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 달리 공조수사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국내 유관기관 공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여타 부서(형사팀, 지구대·파출소)에서도 마약의심자에 대한 시약검사의뢰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수사팀의 공조협력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현장출동은 실제 대상자에 대한 검거 및 압수·수색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장 진출 전 압수장비 등 출동준비, 사건현장 이동(왕복)과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증거물 압수·수색, 그리고 현장 채증(소변·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현장 압수·수색·채증 관련 서류업무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조사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말한다. 여

8) 단,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서 국내공조의 범위는 유관기관 간 공조에만 한정함.

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업무 외에도 조사준비(출석요청 등) 업무, 조사과정 및 조사 후 서류작업(조서작성·정리 등) 등 일련의 업무시간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피의자 조사에서는 공범수사, 상·하선 추적수사가 진행되고 상선 추적의 주요 업무에는 대상자 관련 기록(수용사실 조회, 면회기록 및 출입국 기록) 확인, 압수자료(통신 및 금융거래, 우편물) 분석, 피의자 진술 확보, 계보도 작성 등이 포함된다.

압수 증거물 처리에는 압수된 증거물의 감정의뢰와 압수물 보관·처리, 압수 및 검증 관련 각종 서류(증명서, 확인서 등)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처리에는 구속영장의 신청과 집행(영장미집행 시에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 포함) 업무가 수반되며, 이밖에 수사지휘로서 팀장에 의한 각종 수사서류의 검토, 수사방향의 제시, 수사관 외근 시 동행 등 업무가 이루어진다.

③ 수사 마무리 업무는 수사결과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사전 송치 전 수사서류의 최종 검토 및 정리 업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를 포함한다.

한편 본 연구의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 분석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 윌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 경제팀 개선방안 연구(2016), 사이버팀 연구(2017) 등에서와 같이 연간 근무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실시된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수사 업무의 정상적 손실 규모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2. 설문 진행 및 데이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마약수사팀에서 처리하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마약수사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및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마약수사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경찰서 형사기능 및 지방청 광수대 등 마약류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수사관이 아니라, 경찰서 및 지방청 수사팀 중에서도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근무하는 마약수사팀 수사관만으로 한정된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마약류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인력은 2017년 9월 현재 218명이다. 그중 17개 지방청의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142명,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이 76명이다.⁹⁾

마약수사팀 근무 수사관이라는 조사대상 모집단(population) 정의를 충실히 따르다면, 그 범주는 2004년 마약수사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마약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는 전체 수사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직 이동 후 경찰관은 사건 처리(소요 시간)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기억 편견의 우려가 있고, 특히 본 연구가 역사적 추이보다는 현 마약수사팀의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현재 마약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설문조사대상은 2017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지방청 및 17

9) 마약류범죄 전담팀의 배치 관서(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7개 지방청 마약수사대 142명: 서울(27), 부산(13), 대구(10), 인천(10), 광주(4), 대전(6), 울산(6), 경기南(11), 경기北(6), 강원(7), 충북(5), 충남(6), 전북(6), 전남(6), 경북(6), 경남(9), 제주(4)

▸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 76명: 서울(34: 남대문·용산·동대문·마포·영등포·강남·송파·노원), 부산(10: 해운대·부산진), 경기南(19: 용인동부·안산단원·부천원미·평택), 전남(9: 목포·순천), 경남(4: 진주)

다만,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약수사팀의 경우 본청 통계상 전담팀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지 실사 결과 경찰서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형사팀(형사1팀, 팀장 포함 5명)으로 편제되어 통상적인 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관으로 하고, 이들 마약수사팀 수사관 218명에 대하여 마약류범죄 처리와 업무수행 여건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만, 17개 지방청 마약수사대의 대장 및 관리반 요원은 직접적인 수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⁰⁾

앞선 <표 6>의 조사 설계를 토대로 개발·작성된 설문과 위 조사 설계(현직 현장 수사관 조사)에 따라 진행되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팀장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 마약수사팀원을 대상으로 본청 마약계의 협조를 통해 약 4주간(2017. 9. 8. ~ 9. 29)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마약류범죄 담당 수사관이 스스로 설문지를 완성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이나, 여러 담당 사건 중에서도 가장 최근(1년)에 수사 송치한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응답토록 제한함으로써 마약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시의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종결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에 대한 기억편견(memory bias)의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마약류범죄의 통계가 그 범죄 특성상 사건단위가 아닌 검거사범(인원) 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설문 구조는 사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시각을 유지하되 각 세부 업무량에 대한 질문은 마약 대상자 처리 인원(1명)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전국 범위의 설문조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최근 중대 마약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응답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마약사건 수사업무가 팀 단위로 함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특성에 따라 기한 내에 전국 관서에서 설문이 모두 완료될 수 있었다. 다만 회수된 총 184부의 설문지 중 응답자 착오로 인해 부적합한 설문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최종적으로 183건을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10) 선행연구인 성폭력 전담팀 연구(2013)의 조사 사례에서도, 당시 조사대상이 관악경찰서의 시범전담팀(팀 책임자를 제외한 조사관 4명, 형사팀(형사과 형사당직 및 강력 1팀-6팀 수사관) 약 80명 등 해당부서 현직 인원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원스톱 수사지원팀 연구(2014)에서도 전국 25개 원스톱센터에 배치된 현직 여성 경찰관 100명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 외에, 마약류 사건 수사업무 규모(처리 소요시간), 적정 업무량 및 적정 필요인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검거인원 수, 마약수사팀 정·현원 관련 통계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경찰청 수사국 마약계 및 각 경찰관서에서 별도로 제공한 2014-2017년간의 수사활동 및 사건처리 실적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2절 업무량 분석 결과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직무분석 및 그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설문에 참여한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마약수사대 및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하여 소속 지방청, 관서 유형, 연령, 계급, 경찰관으로서의 총 재직연수, 마약수사팀 근무경력 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응답 수사관(183명)들의 소속 지방청을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서울 57명(31.3%), 경기남부 27명(14.8%), 부산 20명(10.9%), 전남 13명(7.1%), 경남 11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부산 및 경기남부 등 3개 지역관서의 경우 전체 응답수사관 중 57.0%로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이들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사 인원이 배치되고 또한 지역 내에 경찰서 단위에도 마약수사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전남과 경남의 경우에도 관내에 각각 마약수사팀 운영 경찰서를 포함하고 있어(전남: 목포·순천, 경남: 진주), 지방청 수사대만 운영되는 타 지역과 달리 다소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 수사관들의 소속 관서를 지역별이 아닌 관서 유형별(지방청, 경찰서)로 살펴보면, 지방청 수사대 소속이 108명(59.0%),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 75명(41.0%)으로 두 관서 간 비율이 약 6:4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수사관 실제 현원(지방청 142명, 경찰서 76명) 비율 약 2:1에 비해 두 관서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설문과정에서 지방청 수사대 소속 수사대장 및 관리반 요원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이다.

〈표 7〉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9월 현재)

변수		빈도 (N=183)	%
소속 지방청	서울	57	31.1
	부산	20	10.9
	대구	8	4.4
	인천	8	4.4
	광주	4	2.2
	대전	4	2.2
	울산	4	2.2
	경기북부	4	2.2
	경기남부	27	14.8
	강원	6	3.3
	충북	3	1.6
	충남	4	2.2
	전북	3	1.6
	전남	13	7.1
	경북	4	2.2
	경남	11	6.0
	제주	3	1.6
관서유형	지방청 마수대	108	59.0
	경찰서 마수팀	75	41.0
연령	20대	9	4.9
	30대	80	43.7
	40대	66	36.1
	50대	28	15.3
계급	순경	11	6.0
	경장	42	23.0
	경사	64	35.0
	경위	57	31.1
	경감	9	4.9
재직연수	5년미만	24	13.1
	5년이상-10년미만	51	27.9
	10년이상-15년미만	33	18.0
	15년이상	75	41.0
부서경력	1년미만	61	33.3
	1년이상-2년미만	36	19.7
	2년이상-3년미만	27	14.8
	3년이상	59	32.2

수사관들의 연령대는 20대 9명(4.9%), 30대 80명(43.7%), 40대 66명(36.1%), 50대 28명(15.3%)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관들의 계급은 순경이 가장 적은 11명(6.0%)인 반면, 경사가 가장 많은 64명(35.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위 57명(31.1%), 경장 42명(23.0%)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원 구성에서 경사와 경위 계급이 전체의 약 2/3을 차지하여(66.1%) 이들 두 계급이 마약수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지방청 수사대 및 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경위급 팀장을 포함한 팀 전체 전수 조사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경위급 수사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경찰관으로서의 재직연수를 보면 우선 15년 이상이 가장 많은 75명(4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51명(27.9%),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3명(18.0%)을 차지했으며, 5년 미만 재직자는 24명(13.1%)으로 나타나, 마약수사팀의 경우 15년 이상 재직자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재직자들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마약수사팀 근무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이 61명(33.3%), 1년 이상~2년 미만이 36명(19.7%), 2년 이상~3년 미만이 27명(14.8%),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59명(32.2%)으로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전체의 1/3으로 가장 많은 비중(33.3%)을 차지했으며, 3년 이상 마약수사 경력을 가진 수사관도 거의 비슷한 약 1/3의 비중(32.2%)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약수사팀 경력기간은 전체적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수사에서 요구되는 업무강도에 비하여 그간 수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 팀 수사조직의 불안정성 특히 경찰서 단위에서의 마약수사팀의 불안정성 등에

11) 마약수사팀의 경우 팀장은 지방청 수사대장 또는 관리반 요원과 달리 수사업무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팀장이 수사 외에 많은 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팀장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선행연구(예컨대 2017년 경찰서 사이 벼수사팀 업무량 분석)와는 다르다.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마약류 유형¹²⁾을 보면 <표 8>에서 보듯이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장 많은 85.8%이고, 다음으로 대마 10.9%, 마약 2.7%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유형에서도 특정 마약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향정사건의 경우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 사건이 전체 마약류 사건의 8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사건은 대마초, 마약사건은 양귀비와 같은 천연마약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마초사건과 마약사건 등의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경우 많아 향정사건이 사실상 마약류 사건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수사 단서를 보면 탐문·첩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123건(67.5%)이고, 다음으로 수사 중 인지가 48건(26.2%), 진정·투서 3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계좌추적, 현행범 체포, 공범자 자수, 신고에 의한 사건 등 기타 8건(4.4%) 등이 있다.

12)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예시한 마약류범죄 사건유형:

사건 유형	마약류 유형	세부 유형	비고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천연마약(자연상태)
		알카로이드	모르핀 · 테바인 · 코데인, 코카인 등
		반합성 마약	헤로인 등
		합성 마약	페치딘, 메사돈 등
2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제	LSD, 합성대마 등
		각성제	필로폰, 엑스타시, 아바
		신경안정제	프로포폴, 졸피뎀
3	대마	대마초	마리화나
		대마수지, 대마제품	해쉬쉬, 대마유 등

〈표 8〉 마약류 사건의 기초통계

변수		빈도 (N=183)	%
마약유형	마약	5	2.7
	향정	157	85.8
	대마	20	10.9
	결측	1	.5
마약유형(세부)	천연마약	5	2.7
	환각제(향정)	6	3.3
	각성제(향정)	150	82.0
	안정제(향정)	1	.5
	대마초	20	10.9
	결측	1	.5
단서	탐문·첩보	123	67.2
	수사중 인지	48	26.2
	진정·투서	3	1.6
	기타	8	4.4
	결측	1	.5
수사관수(명)	1	1	.5
	2	14	7.7
	3	16	8.7
	4	73	39.9
	5	58	31.7
	6	18	9.8
	8	2	1.1
	결측	1	.5
수사기간	1개월이내	38	20.8
	2개월이내	48	26.2
	3개월이내	53	29.0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33	18.0
	6개월초과	10	5.5
	결측	1	.5

마약류 사건의 수사 단서를 보면 대부분 탐문·첩보, 수사 중 인지 등에 의한 인지사건이다. 다만, 2017. 6. 3일부터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사용 광고행위에 대한 처

별¹³⁾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선 관서에서는 마약류 광고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사건이 다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 수에서는, 경제팀 및 사이버팀의 경우, 1인에 단독 배당된 경우가 가장 많으나(사이버팀의 경우 1인 수사관 사건 64.7%), 마약수사팀의 경우에는 첩보수집, 현장출동, 대상자검거 등 복수의 수사관들의 협력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 특성이 반영되어 4명 이상 사건이 가장 많은 39.9%, 5명인 사건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관 4~5명인 사건이 대다수인 점은 현재 마약수사팀의 팀당 인력과 편제로 볼 때 사건 발생 시 팀장 포함 마약수사팀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처리에 소요된 수사기간은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38건(20.8%),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48건(26.2%),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53건(29.0%)으로 나타나, 사건 처리 기한의 제도적 제약에 따라 대체로 3개월 이내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된 경우가 33건(18.0%), 6개월 초과 처리사건도 10건(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2.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주요

13) 마약류관리법[시행 2017.6.3.] [법률 제14353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조 제12호 및 제62조 제1항 제3호 신설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제조·매매·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4) 주로 지능팀이 담당하는 보험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이 1개월 이내 3.4%, 2개월 이내 13.8%, 3개월 이내가 23.5%에 불과한 반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사건이 28.7%, 6개월 초과 처리사건이 가장 많은 30.6% 등 비교적 장기간으로 나타난다. 정웅(2014b: 18).

통계 기준이 사건 “건수”가 아닌 검거 “인원”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사건을 다른 수사기능에서의 사건들과 같이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처럼 건수 기준에 입각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을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대한 분석은 통계활용이 가능한 마약 대상자 개인별(인원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계자료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업무량 조사에서 피의자 1명인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복수의 마약류사범이 포괄된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전체가 아닌 특정 피의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업무량 조사결과 및 분석에서 말하는 마약류 사건 1건의 의미는 피의자 1인을 의미하며, 검거 통계에서 검거 인원은 곧 검거사건 수와 동일하게 의제되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단위: 시간(h)

	N	최소값	최대값	M	SD
첩보수집—정보원	166	.0	38.0	8.892	7.4947
첩보수집—외근	161	.0	28.0	7.366	7.0867
첩보수집—내근	161	.0	36.0	5.640	6.7745
첩보수집—서류	164	.0	4.0	2.396	1.3275
첩보내사—정보원진술	172	.0	16.0	6.436	5.2249
첩보내사—외근	160	.0	36.0	8.537	7.2180
첩보내사—내근	160	.0	32.0	7.738	6.7119
첩보내사—서류	159	.0	6.0	2.610	1.3260
통신자료요청	168	.0	4.0	1.399	1.0008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63	.0	4.0	1.816	1.0943
영장신청	163	.0	4.0	2.046	1.2979
인터넷·통신수사	168	.0	56.0	13.780	12.1603
탐문감시	153	.0	64.0	15.641	14.0388
위장거래	167	.0	16.0	4.719	6.2910
자료분석	167	.0	24.0	9.778	6.1941
분석결과—서류	170	.0	18.0	8.435	4.9254
국제공조	168	.0	18.0	2.071	4.9277
국내공조	167	.0	16.0	2.778	5.0005
현장출동준비	169	.0	8.0	1.923	1.5304
현장이동검거	178	.0	16.0	8.483	4.3417
현장증거물 확보	178	.0	8.0	2.135	1.4157
현장증거물—서류	177	.0	8.0	2.356	1.3952
피의자조사	181	.0	24.0	6.680	4.1962
공범·상하선조사	179	.0	24.0	7.316	4.9067
참고인조사	178	.0	18.0	3.596	3.5960
피해자조사	167	.0	12.0	0.865	2.3506
감정의뢰(서류업무포함)	133	.0	8.0	4.598	2.1386
압수물보관폐기(서류업무포함)	139	.0	8.0	4.072	2.2957
유치장입출감	178	.0	16.0	4.315	4.0101
구속영장신청	164	.0	8.0	2.744	1.6266
구속영장집행	179	.0	16.0	3.436	3.1574
수사지휘	162	.0	16.0	5.747	4.6935
송치서류정리	176	1.0	16.0	7.420	4.0770
피의자검찰송치	167	.0	16.0	3.605	2.8241
합계				181.369	
유효수 (목록별)	69				

초기수사 중 첩보내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진술 등 첩보내사 활동에 6.436시간, 외근 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 의한 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6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인터넷·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약 0.865시간으로 나타났다. 검거 후 압수된 증거물 등의 처리 업무로서 우선 생체시료 및 압수물의 감정의회(감정의뢰서 및 회신결과보고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598시간, 압수물의 보관·폐기(압수물 보관·폐기 관련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072시간이 소요되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구속 전 유치장 입·출감에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미집행 시 조치,

집행정지·취소, 석방 등 관련 업무 포함)에 3.436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등 수사지휘 시간은 5.747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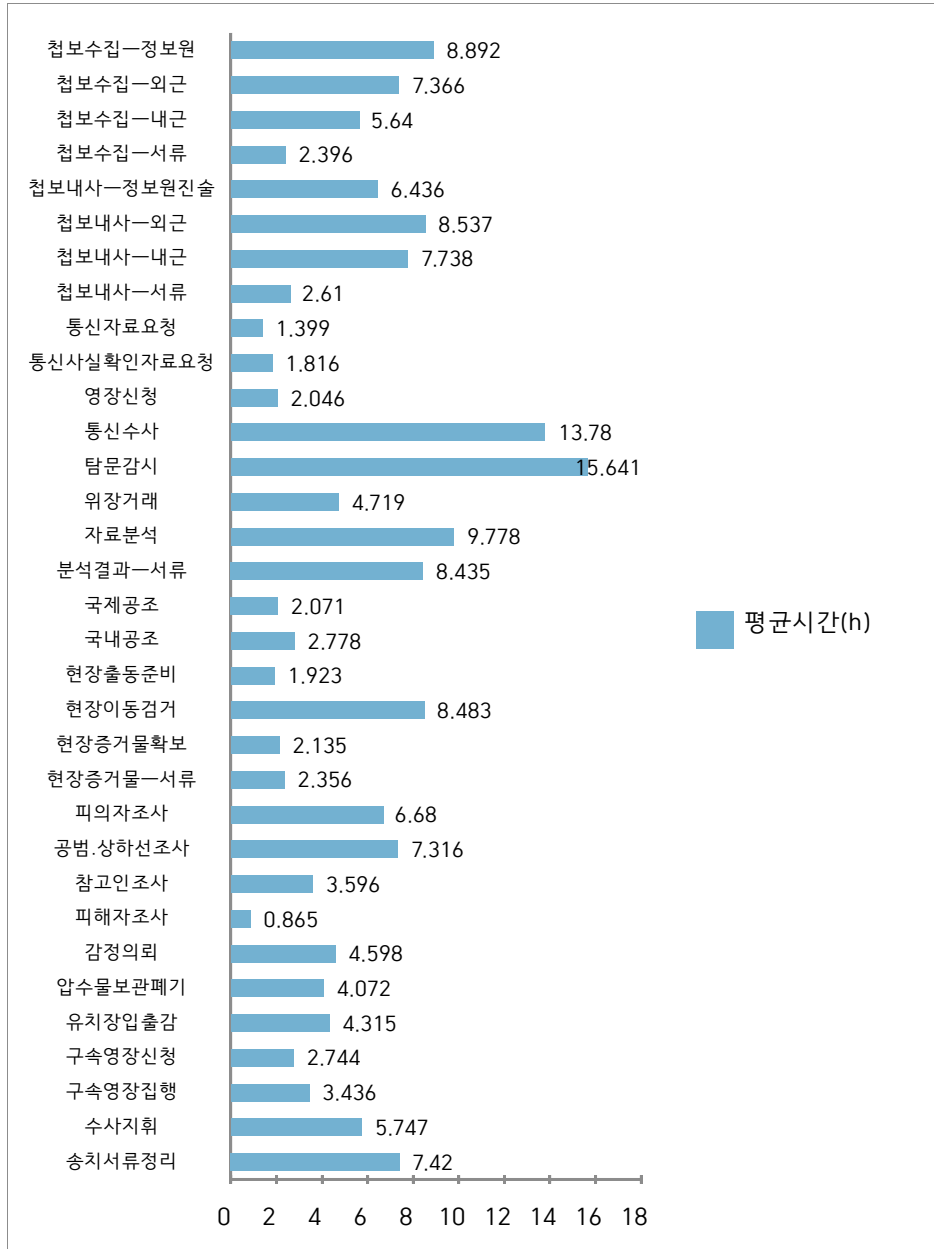
마지막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마약류 사건 1건 당 소요되는 총 시간을 보면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수사 업무 가운데서도 각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 단계에서 특히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인터넷·통신수사(13.780시간)였다. 그 다음으로는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내사(8.537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8.48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단위: 시간(h)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마약팀)로 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49,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76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단위: 시간(h)

관서	평균	N	표준편차
지방청 수사대	182.8049	108	72.43876
경찰서 마약팀	179.2976	75	68.52815
합계	181.3675	183	70.69224

주: 1) 관서별 각 케이스에서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t-검증에서도 두 집단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을 통해 보듯이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즉 유의확률 p-value가 .330로서 $\alpha=.05$ 에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

등분산의 가정을 충족하므로 등분산이 가정된 t-tes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t-value가 .329, p-value가 .742로 나타나 $\alpha=.05$ 에서 집단 간 평균에 동일성이 있다는 설명은 지지되었다. 즉 관서별 평균(소요시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가설은 채택될 수 없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마약류 사건 수사업무가 관서별로 상이한 평균 소요시간을 갖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관서에 관계없이 전체 마약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소요시간 평균치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1〉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955	.330	.329	181	.742	3,50730	10,65175	-17,51028	24,52489
등분산 가정 없음			.333	164,781	.740	3,50730	10,54522	-17,31385	24,32846

마약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8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1시간, 마약 121.7761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마약류 사건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단위: 시간(h)

마약 유형	평균	N	표준편차
마약	121.7761	5	112.75611
향정	183.4289	157	71.07406
대마	180.6021	20	52.36021
합계	181.4245	182	70.88304

주: 1) 유형별 각 케이스에서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제4장 마약수사팀의 적정 업무량 및 인력 산출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1.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및 마약수사팀 적정 인력 규모의 추정에 앞서, 마약류 사건의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시간 등을 고려한 수사관의 업무량 모형 등 적정 업무량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첩보수집에서부터 본 수사 단계를 거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일정 기간(연간) 내 가용 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건수)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text{ ----- 식 (1)}$$

단,

$$W_n = \text{연간 적정 건수(피의자 1인 사건 기준)} = \text{연간 적정 처리 인원}$$

$$L_y = 1일\ 기본\ 근무시간(L_h) \times \text{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bar{h} = \frac{\sum h_i}{N} = \text{피의자 1인당 평균 처리 소요시간,}$$

여기서 h_i = 개별 사건 i 의 처리 소요시간, N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마약수사팀 수사관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사건 1건당(피의자 1인당) 사건처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범죄 유형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적 업무량 추정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범죄 유형과 업무 크기 등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text{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text{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quad \text{----- 식 (2)}$$

단, 여기서 \bar{h}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bar{h} = \frac{\sum(\text{유형별 건수} \times \text{유형별 평균 소요시간})}{\sum \text{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위의 식에서 \bar{h} 을 다시 써보면,
$$\bar{h} = \frac{\sum n_i \bar{h}_i}{\sum n_i},$$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bar{h}_i = 유형 i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식 (1)의 기본 모형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W_n = L_y \div \bar{h}$). 그러나 \bar{h} 의 산출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은 \bar{h} 을 구할 때, 개별 각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모두 더하고 ($\sum h_i$) 이를 단순히 전체 사건(N)으로 나눈 것이다($\bar{h} = \frac{\sum h_i}{N}$). 반면에 식 (2)에서의 \bar{h} 는 사전에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구해진다.

2. 마약수사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수사관 개인별 적정 업무량과 같이 각 경찰관서 마약수사팀의 경우에도 팀별 인원 수 및 팀의 연간 기본근무시간, 사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 업무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즉, 수사관 정원(L_p)이 l 명 ($L_p=l$) 인 P지방에 A경찰서 마약수사팀 (팀원 수= m 명), B경찰서 마약수사팀 (팀원 수= $l-m$ 명)으로 두 팀이 편성되었을 경우,

A마약수사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k, j=m}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j = 수사관, n_{ij} = 수사관 j 가 담당할 유형 i 사건의 처리 건수, mL_y = A마약수사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마약수사팀은 $\sum_{i=1, j=m+1}^{i=k, j=l}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m+1}^{i=k, j=l} n_{ij} \bar{h}_i \leq (l-m)L_y$,

여기서 $(l-m)L_y$ = B마약수사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예컨대, 수사관 정원이 30명 ($L_p= 30$)인 P지방에서 마약수사팀 전체 인원이 20명($j= 20, j_1 \sim j_{20}$)인 A경찰서 마약수사팀이 6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여 운영할 경우,

A경찰서 마약수사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6, j=20}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6, j=20} n_{ij} \bar{h}_i \leq 20L_y$ 이다.

여기서 $20L_y =$ A마약수사팀(2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또한,

전체 인원이 10명($j=10, j_{21} \sim j_{30}$)인 B경찰서 마약수사팀 적정업무량(건수)은 $\sum_{i=1, j=21}^{i=6, j=30}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21}^{i=6, j=30} n_{ij} \bar{h}_i \leq 10L_y$,

여기서 $10L_y =$ B마약수사팀(10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3.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갖는 사건 발생을 고려할 때, 팀원 간 또는 팀 간 형평성을 갖는 정밀한 사건 배당 또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당 준칙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사건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건을 마약수사팀 팀원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sum n_{ia} \bar{h}_i = \sum n_{ib} \bar{h}_i \leq 1 \text{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예컨대 마약수사팀 내 수사관(j)으로 a, b가 근무할 경우, 수사관 간

에 유형별 평균처리 소요시간(\bar{h}_i)을 고려한 업무량이 같도록 배당하여야 하며, 또한 수사관 개인별 처리소요시간의 합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현재 각 경찰관서 마약수사팀은 한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인별 사건배당 보다는, 팀 구분이 되어 있는 지방청 수사대 단위에서 팀별로 균등 업무배당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극히 제한된 경찰청 마약수사 인력운영체계 아래서는 매우 어렵지만, 인력 충원 이후 팀 간 장기적인 형평성 추구하고 인력 재배치 시각에서 본다면, 팀별 업무 배당은 적어도 앞서서의 마약수사팀별 적정 업무량 모형의 제약조건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을 만족하는 업무량 분담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추정

1.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은 시간 기준으로 볼 때, 1일 기본 근무시간(L_h) ×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 L_y 로서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은 최근 5년(2013-2017) 평균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을 적용한 결과¹⁵⁾, 249일=1,992시간으로 산출된다.

$$1,992\text{시간}(L_y) = 8\text{시간}(L_h) \times \text{기본근무일 } 249\text{일}(L_d)$$

단, $L_h = 1$ 인당 1일 기본 근무시간(8시간),

15) 2013-2016년간 기본근무일수는 2013년 249일, 2014년 249일, 2015년 251일, 2016년 249일, 2017년 247일이다.

$L_d = 1$ 인당 연간 기본 근무일수(최근 5년 연평균 249일).

위의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W_n)을 시간이 아닌 처리사건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사건 기준)은
 $= 1$ 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1,992$ 시간(L_y) \div 181.369시간(\bar{h})
 $= 10.983$ 건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1건을 피의자 1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W_n)에서 적정 업무 건수 10.983건은 곧 마약류사범 인원수(10.983명)를 의미하게 된다(적정 처리 건수 = 적정 처리 인원).

2.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 표준 모형

앞선 기본 모형에서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10.983건은 수사관이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하는 직무교육 및 연가¹⁶⁾ 등 업무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마약수사팀 수사관들은 <표 13>에서 보듯이, 연간 근무기간 중 대부분이 직무교육(145명) 또는 연가(172명)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수사팀 수사관들의 1인당 업무손실일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4.76일, 연가 8.13일 등으로 연 평균 12.89일로 조사되었다.

16) 직무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등 경찰교육기관과 외부위탁에 의한 교육을 포괄하고, 연가의 경우 일반 연가 외에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포함한다.

〈표 13〉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연간 1인당 업무손실(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교육	145	0	28	4.76	6.220
연가	172	0	30	8.13	4.337
합계				12.89	

직무교육 · 연가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일 약 12일을 기본 모형에서 차감하여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을 재산정하면, 기본근무일 249일(L_d) - 업무손실일 12일(L_{dc}) = 237일이다.

여기서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수정된 위의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시간은 곧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으로 표현되며, 이를 다시 쓰면

$$L_{yc} = \text{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text{1인당 연간 업무손실시간}(L_c)$$

단, L_{yc} =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

$$L_c = \text{1인당 연간 업무손실일}(L_{dc}) \times \text{1인당 1일 기본 근무시간}(L_h)$$

마약수사팀에서 $L_y = 1,992$ 시간, $L_c = 96$ 시간($L_{dc} = 12$ 일, $L_h = 8$ 시간)이므로, 업무손실을 고려한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서의 가용 근무시간 즉 표준근무시간(L_{yc})은 1,896시간으로 수정된다. 이는 앞에서 기본모형으로부터 차감 수정된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 237일과 같다(1,896시간=237일 × 8시간).

업무손실을 고려한 표준모형에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을 적용하여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면,

$$\text{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div \text{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1,896\text{시간}(L_{yc}) \div 181.369\text{시간}(\bar{h})$$

$$= 10.453\text{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제3절 마약수사팀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1. 기본 모형

마약수사팀 필요인력의 산출을 위한 인력표준안 설계에는 앞선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L_y), 건당 평균 사건 처리 소요시간(\bar{h}) 등의 개념과 기본 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지방청 단위나 혹은 일선 경찰서 수준이 아닌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_p)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기본 모형).

$$L_p = \text{연간 마약류 사건처리 총 소요시간}(H_p) \div \text{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quad \text{----- 식 (3)}$$

$$\text{단, } H_p = \text{연간 사건수}(N_p) \times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위의 모형에 따라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필요인력(L_p)을 산출해 보면, 우선 연간 사건수(N_p)는 최근 5년(2013-2017)을 기준으로 평균 7,240건이다¹⁷⁾,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은 앞선 추정결과에서 181.369시간이다. 따라서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7,240건(N_p) \times 181.369(\bar{h}) = 1,313,111.56시간이다.

17)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으로 5년(2013~2017) 평균 7,240명이다.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 따라 검거 인원수=사건 수이며, 7,240명은 곧 7,240건으로 치환된다.

그에 따라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_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의 경우 2013-2017년 5년 평균 1,992시간을 적용한 결과,

$L_p = 1,313,111.56\text{시간}(N_p \times \bar{h}) \div 1,992\text{시간}(L_y) = 659.2\text{명}$ 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2. 표준 모형: 업무 손실의 고려

위의 기본 모형에서는 적정 업무량 분석에서와 같이 사건처리 중 발생하는 직무교육·연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약수사팀 수사관들 역시 타 수사기능과 같이 불가피한 개인 연가와 직무교육이 실시되고 그로 인한 수사관의 업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직무교육·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일 약 12일을 기본 모형에서 차감한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일은 237일이며, 이를 고려하여 수정된 위의 1인당 연간 가용 근무시간 곧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은 1,896시간이다.

업무손실이 고려된 이른바 표준 모형에서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_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준 모형).

$SL_p = \text{연간 마약류 사건처리 총 필요시간}(H_p) \div 1\text{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 식 (4)

단, $H_p = \text{연간 사건수}(N_p) \times 1\text{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위의 모형에 기초하여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필요인력(L_p)을 살펴보면, 우선 연간 사건수(N_p) 7,240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181.369시간,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 1,313,111.56시간은 기본 모형과 같다.

그러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을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1,89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_p)은

1,313,111.56시간($N_p \times \bar{h}$) \div 1,896시간(L_y) = **692.6명**으로 산출된다 (표준 모형).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주요 통계 기준이 사건 “건수”가 아닌 검거 “인원”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업무량 조사에서 피의자 1명인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업무량 조사결과와 분석에서 말하는 마약류 사건 1건의 의미는 피의자 1인을 의미하며, 검거 통계에서 검거 인원은 곧 검거 사건 수와 동일하게 의제되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기수사 중 첩보내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진술 등 첩보내사 활동에 6.436시간, 외근 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 의한 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6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

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약 0.865시간으로 나타났다. 검거 후 압수된 증거물 등의 처리 업무로서 우선 생체시료 및 압수물의 감정의뢰(감정의뢰서 및 회신결과보고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598시간, 압수물의 보관·폐기(압수물 보관·폐기 관련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072시간이 소요되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구속 전 유치장 입·출감에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미집행 시 조치, 집행정지·취소, 석방 등 관련 업무 포함)에 3.436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등 수사지휘 시간은 5.747시간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총 시간을 보면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수사 업무 가운데서도 각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 단계에서 특히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통신수사(13.780시간)였다. 그 다음으로 는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내사(8.537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8.48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마약팀)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49,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76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8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1시간, 마약 121.7761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타 유형에 비해 적은 업무량을 보이고 있다.

마약수사팀의 적정 인력 산출에 앞서 수사관의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을 보면 시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2013-2017) 평균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을 적용한 결과, 249일=1,992시간으로 산출되었으며 처리사건의 건수 기준으로 보면,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10.983건으로 산출되었다(기본 모형).

한편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1건을 피의자 1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적정 업무량(W_n)에서 적정 업무 건수 10.983건은 곧 마약류사범 인원수(10.983명)를 의미하게 된다(적정 처리 건수 = 적정 처리 인원).

한편 마약수사팀 수사관들의 1인당 업무손실 시간(\bar{h}_c)은 직무교육 4.76일, 연가 8.13일 등으로 연 평균 12.89일로 조사되었다.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은 1,896시간으로 조정되고 이를 적용하여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다시 구하면, 연간 10.453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L_p)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3~2017) 평균 연간 사건수(N_p) 7,240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7,240건(N_p) \times 181.369(\bar{h}) = 1,313,111.5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1,99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L_p)은 659.2명으로 산출되었다(기본 모형).**

그러나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_p)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L_{yc})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준 모형).

$SL_p = \text{연간 마약류 사건처리 총 필요시간}(H_p) \div \text{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위 식에서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을 연간 표준근무시간(L_{yc}) 1,89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경찰청(P)의 마약수사팀 표준 필요인력(SL_p)은

$1313,111.56\text{시간}(N_p \times \bar{h}) \div 1,896\text{시간}(L_{yc}) = \mathbf{692.6\text{명}}$ 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18명이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른 마약수사팀의 적정 필요인원(Lp)은 659.2명으로 나타났다(기본 모형). 또 업무 손실 시간을 고려한 필요인원(SLp)은 692.6명으로(표준 모형), 기본 모형을 통한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441.2명, 표준 모형을 통한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474.6명이다. 따라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202.4%, 217.7%에 달함으로써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¹⁸⁾

타 수사기능(경제팀, 사이버팀)의 사례와 같이 마약수사팀 부족 인원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관을 충원하도록 하되,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 운용과 함께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증원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 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마약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세부 업무 중,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13.780시간)와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업무이다.

한편 마약류범죄 유형 가운데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사범은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이 검거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2017년에도 전년 수준인 1,100명이 검거됨으로써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향후에도 그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 부족인원 비율= 필요인원 ÷ 현원. 앞선 사이버팀 연구(2017)에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141.9%, 경제팀 연구(2012)에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75.8%로 산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통신수사 업무와 인터넷 마약류사범 대응을 위한 수사 환경은 보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다. 이른바 딥웹(deep web)¹⁹⁾·SNS, 비트코인(Bitcoin)²⁰⁾ 등을 이용한 첨단 마약류범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사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딥웹에서 마약류 매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사역량 필요하고 또 일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SNS의 경우 해외 채팅 앱²¹⁾ 외에 마약류 유통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채팅 앱만 200여개로 이들 각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 위장거래 단계에 적지 않은 수사력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지급한 마약류 매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 유통과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금융계좌수사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극히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

19) 딥웹은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말한다. 별도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르’ 같은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컴퓨터 주소인 IP는 여러 차례 우회하며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우회 통로마다 암호화된 장벽도 있다. 사용하는 화폐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딥 웹은 일상적인 용도 뿐 아니라 아동포르노, 마약, 자살사이트, 무기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진다. 딥웹에서 얻은 자료는 일반적인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적발될 가능성이 없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딥웹을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 무기 거래, 청부살인, 대형화된 마약 거래상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딥웹(deep web)”, <http://dic.hankyung.com>(검색일: 2017. 9. 30).

20)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화폐로, 2009년 개발되었다. 시사상식사전, “비트코인(Bitcoin)”, pmg(박문각)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검색일: 2017. 9. 30).

21) 해외 채팅 앱으로는 텔레그램(Telegram), 위챗(wechat) 등이 주로 사용됨.

22) 전국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 현원을 보면 5명(9곳), 4명(7곳)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팀장 포함 3명으로 운영되는 곳(1곳, 서울 동대문)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에도 대전, 전북, 전남, 경북, 충북은 현원이 6명, 충남 5명, 광주 4명, 제주 4명으로서 지방청 단위의 주력 수사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선 경찰서 규모에서 유지되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²³⁾와 같은 퇴行的 조직운영에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 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3) 2016. 6. 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마약수사팀 해체.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경찰청, 마약류범죄 수사매뉴얼, 2015. 10.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 이해, 2015. 11.

경찰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 1.

이윤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연구보고서), 경찰청 미간행 보고, 2013. 9.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a.

정웅,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b.

정웅,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5.

정웅,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6.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7.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2. 논문 및 기타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 경찰청 수사국, “17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통계 분석”, 2017. 7. 17.
- 경찰청 수사국, “17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결과”, 2017. 8. 11.
- 경찰청 수사국, “마약수사전담 수사관 인력 현황”, 2017. 9.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2018. 2.
-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5.
- 정웅, “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2015.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 Pickett, K.H. Spencer and Jennifer M. Pickett,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2. 논문 및 기타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Law enforcement officer arraigned for compromising drug investigation", Public Information Office, July 3, 2017.

Ⅲ. 인터넷 자료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Organizational Chart" <https://www.justice.gov/agencies/chart>(검색일: 2017. 9. 20).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DEA Mission Statement", <https://www.dea.gov/about/mission.shtml>(검색일: 2017. 8. 20).

한경 경제용어사전, "딥웹(deep web)", <http://dic.hankyung.com>(검색일: 2017. 9. 30).

시사상식사전, "비트코인(Bitcoin)", pmg(박문각)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검색일: 2017. 9. 30).

[부 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18.5.18.] [법률 제14019호, 2016.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슝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룬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

- 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6.7.>]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원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2.3.>
9. 삭제 <2016.2.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제4항

[전문개정 2011.6.7.]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2.3.>
9. 삭제 <2016.2.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제5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3조

제3조의2[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6.7.>]

제3조의2[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6.7.>]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원(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1.6.7.]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8.3.13.]

[시행일 : 2018.9.14.] 제5조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이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

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일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재배·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보관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⑤ 예고임시마약류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11.6.7.]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3.13.>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13.>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5조의2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6.7.>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2.3.>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

- 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清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④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6.7.>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2016.2.3.>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10조 삭제 <2015.5.18.>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 및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환자 또는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8.]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11.6.7.]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전문개정 2011.6.7.]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예고임시마약 또는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전문개정 2011.6.7.]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2018.3.13.>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15조

제16조(봉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합(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합은 그 봉합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마약류수출입업자
2. 마약류제조업자
3. 마약류원료사용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5. 마약류취급승인자

②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합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1.6.7.]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6.7.>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9조 삭제 <2015.5.18.>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제23조 삭제 <2015.5.18.>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5조 삭제 <2015.5.18.>

제26조(마약류의 도매)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제27조 삭제 <2015.5.18.>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1.6.7.]

제29조 삭제 <2015.5.18.>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7.]

제31조 삭제 <2015.5.18.>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6.7.]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전문개정 2011.6.7.]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환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장 마약류 중독자 <개정 2011.6.7.>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6.7.]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6.7.>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6.7.]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41조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전문개정 2011.6.7.]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 사. 삭제 <2015.5.18.>
 - 아. 삭제 <2015.5.18.>
 -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합하지 아니하거나 봉합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거. 삭제 <2015.5.18.>
 - 니.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더.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 페.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1호·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파목·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신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 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 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2.3.>

⑤ 허가신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 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도지사

[전문개정 2011.6.7.]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 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4.3.18.]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 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3.13.>

[전문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4.3.18.]

[시행일 : 2018.9.14.] 제47조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6.4.>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7장 보칙 <개정 2011.6.7.>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3.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2.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6.7.]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장 벌칙 <개정 2011.6.7.>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58조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59조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60조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 [전문개정 2011.6.7.]
- [시행일 : 2018.9.14.] 제61조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62조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63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6.7.]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64조

제65조 삭제 <2002.12.26.>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

(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5.18.>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5.5.18.>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 2018.9.14.] 제69조

부칙 <제14834호, 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 마약 거래방지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개정 2011.6.7.>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③ 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④ 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 또는 통보를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에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수익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7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 거래 상대방과 관계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09.11.2.]

[제목개정 2011.7.14.]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개정 2011.6.7.>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9.11.2.]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9.11.2.]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2조(국외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형법」 제5조의 예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

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전문개정 2009.11.2.]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에 따른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1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09.11.2.]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17조(불법수익의 추징) 제6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같은 조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

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9조(권리 존속의 신고)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① 권리를 이전할 때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 이전 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제1절에 따라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11.2.]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3조(고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신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4조(참가 절차)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25조(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6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7조(증거)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11.2.]

제29조(상소)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0조(대리인) 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우(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11.2.]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① 동산(제38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 및 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4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

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1.2.]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⑤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③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를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의 제3차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5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⑥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7조(추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정보전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8조(추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정보전명령은 추정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9조(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정보전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추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제6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추정보전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2조(불복신청) ①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3조(준용)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4조(공조의 실시) ① 마약류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범죄(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형벌을 과(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징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추징재판 또는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에 관한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재판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집행한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 확정 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5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①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 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② 불법재산을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6조(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제67조(법원의 심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추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정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인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

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68조(항고) ① 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9조(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제70조(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그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1.5.23.>

③ 제1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67조제1항의 심사청구가 있는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때에는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3조(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① 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공조요청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45일 이내에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② 법원은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1.2.]

제74조(절차의 취소) ① 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 또는 법관은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5조(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76조(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제77조(관할 법원) 이 장에 따른 심사, 몰수보전, 추징보전 또는 영장발급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에 소속된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8조(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및 「범죄인인도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제14476호, 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⑰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발 간 등 록 번 호
11-1332522-000070-01

2017-06
책임연구보고서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

2018년 9월 발행

발 행 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 행 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